

2020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및 용자금 지원 안내

클린사업장 조성 보조금 지원

지원대상 |

- 제조·서비스업 등 : 5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
- 고용노동부의 감독·점검을 받은 사업장
 - 안전보건공단, 민간위탁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은 사업장
 -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

지원내용 |

유해·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



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보조금 지원

지원대상 |

-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으로,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를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행하는 사업주
 - 고용노동부 점검·감독 또는 공단의 기술지원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사업주
 - 사망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유해·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단이 따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



지원내용 |

공단판단금액의 일정금액 지원(클린사업장 조성 보조금 지원 포함)

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보조금 지원

지원대상 |

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산업단지 관리주체, 산업단지 내 입주 사업장, 사업주단체

지원내용 |

- 산업단지 당 최대 10억원 한도
- 공단판단금액의 50% 지원
 - ※ 산업단지 내 교육시설·자료실·상담실·체력증진 시설 등 설치 비용 일부지원



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원

지원대상 |

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으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(시스템 비계, 안전방망) 설치 사업주

지원내용 |

시스템비계 임대·설치·해체, 안전방망 구입·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



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금 지원

지원대상 |

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(300인 미만 우선 지원)

지원내용 |

-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, 연리 1.5%, 3년 거치 7년 상환
- 공단판단금액의 100% 용자



신청기간 및 접수방법

- 신청기간 | 2020. 1. 1. ~ 재원소진 시까지
- 접수방법 | • 제출서류 : 산재예방시설자금 용자·보조지원 신청서
- 제출방법 : 온라인신청, 우편 또는 방문 제출

문의전화

1544-3088

홈페이지

clean.kosha.or.kr